

「평창군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첨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이창열 의원
- 제안일자 : 2025. 5. 9.
- 회부일자 : 2025. 6. 9.
- 상정일자 : 2024. 6. 10.

2. 제안이유

-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부모교육을 지원하여,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- 부모교육의 대상, 내용 등(안 제5조~제6조)
- 재정지원, 홍보 등(안 제8조~제9조)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주민의 복지 증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,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, 제 26조 및 제32조에서 부모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.

나. 입법의 취지

-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자녀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며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3조(군수의 책무)에서 군수는 부모교육 제공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.
- 안 제5조(부모교육의 대상)에서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, 자녀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군민을 교육의 대상으로 정하였음.

- 안 제6조(부모교육의 내용 및 방법)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강의, 시청각 교육,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함.
- 안 제8조(재정지원)에서 군수는 부모교육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.
- 안 제9조(홍보)에서 군수는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홍보 하도록 규정함.

5. 종합검토의견

- 부모 역할을 올바르게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창군민의 건강한 가정 구현과 자녀의 바른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취지는 타당하고 수권 범위 내에서 위배 되는 사항 없이 규정된 것으로 판단됨.

불임 관계 법령

□ 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)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로 하지 아니하다.

1. (생 략)
2. 주민의 복지증진
 - 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 - 나. ~ 다. (생 략)
 - 라. 노인 · 아동 · 장애인 ·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 - 마. ~ 차. (생 략)
3. ~ 7. (생 략)

□ 건강가정기본법

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- ② ~ ③ (생 략)

제26조(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부 및 세대간에 가족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 · 상담하고,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, 다양한 가족생활교육 · 부모교육 · 가족상담 · 평등가족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.

- ② (생 략)

제32조(건강가정교육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결혼준비교육
2. 부모교육
3. 가족윤리교육
4.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